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5/2564 호

투자 촉진 부양책

-----

2014년 12월 3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2/2557 호 투자 촉진 정책 및 규정에 의거하여 태국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서

대상 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능한 한 빨리 국내적으로 투자유치를 장려할수 있도록 투자촉진법 불교년 2520년 16항, 18항, 3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사항을 발표함

1. 모든 지방구역을 투자 촉진지역으로 지정함

2. 조건

2.1 A1, A2, A3에 해당하는 활동범주의 사업체여야하며 아래는 제외함

(1) 해상 운송업이나 항공운송업 같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업종

(2) 남쪽 국경 지역이나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존재하는 업종

2.2 법인세 면제에 관한 권리와 혜택을 부여받는 프로젝트로서 모든 업종을 포함하여 투자촉진기간이 최대 8년을 넘지 않아야함

2.3 투자촉진 인증서가 발급된 이후로 12개월 이내의 투자금액(토지 비용과 순환자본 제외)이 10억 바트 이상이어야함

2.4 투자촉진을 받는 기간에 대한 연장관련 승인 인증서는 발급 승인을 받을수없으며 기계를 들여오는 기간과 사업 시행일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에 대해 고려를 하게됨

2.5 투자촉진위원회에서 지정한 18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른 추가 권리와 혜택을 받기위한 실제적인 투자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남은 법인세 면제에 대한 권리와 혜택과 법인세 면제를 받는 금액이 남아있어야함

3. 추가 권리 및 혜택

추가 권리 및 혜택은 취득한 순 이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받는것으로서 법인세 면제에 대한 권리와 혜택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5년간 정상 금리의 50%에 대해 면제혜택을 받게됨

4. 이 안내사항은 2021년 1월 4일이후 부터 2021년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프로젝트 투자촉진요청

에 대한 내용을 적용함

5. 투자촉진위원회에서 권리와 혜택을 부여할수있는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하지않는 부분에 있어 직접 고려를 하게되고 또한, 추가 권리나 혜택을 얻기위해 실제 투자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시간연장에 대한내용 역시 위원회에서 고려를 하게됨

2021년 1월 4일부터 적용

2021년 3월 19일에 고시

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촉진위원회장